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절차, 기본설계 포함 사항, 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용,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 개발비용 분할납부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마련 (안 제2조)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규정함.

나. 기본설계 포함 사항 및 환경영향조사 항목 명확화 (안 제3조, 제4조)

- 1)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기본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2)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을 별표로 정하고, 해양물리, 해양수

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분야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및 분쟁조정 신청 서식 규정 (안 제5조, 제7조, 제8조)

- 1) 민관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의 추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민간위원 중 어업인단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영향을 예상되는 지역이나 업종과 관련된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대표는 예비지구 최외곽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정함.
-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담은 협의의견서의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서식 마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 선정서,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착공신고서, 공사중지신고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각종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마련함.

마. 환경성평가 협의 절차 및 전문기관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1)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의 서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2) 환경성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성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및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추천 위원 등의 참여를 명시함.
- 3)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협의의견 작성을 위한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바. 개발비용 분할납부 및 이행보증금 규정 (안 제17조)

- 1) 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하고,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 전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함.
- 2) 이행보증금은 지급보증서, 수익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함.

사.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서식 등 마련 (안 제18조)

- 1)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2)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FAX: 044-203-47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omas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
환경부 풍력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담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보완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기본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

된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지구의 명칭 · 위치 · 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용량

3.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가. 설계기준서

나. 풍황자원 분석 결과

다. 해양물리 · 수리조사 결과

라. 지질조사 및 대표 지반조사 결과

마.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검토 결과

4. 설계 기본계획

가. 해상풍력터빈의 배치설계안

나. 해상풍력터빈의 최대 허용 높이

다. 하부구조물 형식 검토 및 개념설계

라. 전력계통 개념설계

1) 해저케이블 계획(내 · 외부망을 모두 포함한다)

2) 해상변전소 설치 계획

3) 육상변전소 연계 계획(송전선로 및 공동접속설비 설치 계획도 포함한다)

마. 주요 시공 및 물류 계획(배후항만 및 이송 ·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5.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가.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및 환경영향조사서

나. 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방안 및 협의의견 반영결과

6.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결과

제4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설계의 개요
2. 기본설계 대상 구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적 특성
3.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4. 대안설정과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분석 결과 및 영향저감대책, 사후 모니터링 계획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설계의 개요
2. 기본설계에 포함된 공유수면 외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3. 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4. 대안설정과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분석 결과 및 영향저감대책
5. 전력계통 연계의 대안설정과 대안에 대한 영향예측·분석결과 및 영향저감대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향조사의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은 별표

에 따른다.

제5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예비지구의 환경, 해양수산, 산업 등의 관련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그리고 필요시 관계 지방의회 의원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민간위원 중 어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가 포함되며, 법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예비지구 어업정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조업정보를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업종과 관련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나.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단체

3. 민간위원 중 지역 주민대표는 기본설계에 포함된 예비지구의 최외곽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민간위원 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는 송전선로 경과지가 속하

는 시·군·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 시 해당 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공익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하는 자로 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별도로 예비지구 지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공동위원장 및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및 분과협의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협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직원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 공동위원장 및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의회의 및 분과협의회의 위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협의결과의 통보 등) ① 민관협의회의는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협의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민관협의회의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협의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관협의회 안건에 대한 주민·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 결과
2. 이해관계자별로 제기된 주요 우려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
3. 지역상생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제안 사항
4. 협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견사항과 조정 결과
5. 민관협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회의 분쟁조정)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2.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분쟁관계자
4. 해당 분쟁사항에 관한 협의 진행 상황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기한의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1차에 한정하여 같은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다.

제10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전자문서로 된 선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실시계획서
2. 변경사유·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지역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공유수면 지역은 제외한다)
4. 지역 개황
5. 보전목표기준 설정
6.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7.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② 영 제32조제7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보전목표기준
8. 현황 조사, 영향 예측 및 분석·평가 및 저감방안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10. 사후 모니터링 계획
11.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2.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3. 대안 설정 및 평가
14. 종합 평가 및 결론

③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의 분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3조(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의 과반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4. 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환경 및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4조(환경성평가 협의절차 등) ① 영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33조제3항단서에 따른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영 제33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9.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착공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6조(준공인가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풍황계측기 설치 등 비용부담 납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

부일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개발비용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지정취소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지정취소한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양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환경성 평가의 항목 및 내용(제4조 관련)

○ 공유수면지역		
분야	항목	내용
1. 환경성 평가 분야	해양물리	· 수온, 염분, 조석, 해수유동(해류, 조류), 파랑, 부유사 등 해양물리 현황 · 해수유동 변화 및 부유사 확산 예측 및 영향의 범위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해양수질	·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양수질 현황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질의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해양퇴적물	·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양퇴적물 현황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해양퇴적물의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해양지형	· 사업해역 및 해저케이블 경과지의 해양지형 현황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침·퇴적 변화 및 세굴 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부유(浮游) 생태계	· 사업지역 및 주변해역의 부유생태계 현황(동식물 플랑크톤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생태지수 등)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부유생태계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저서(底棲) 생태계	·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저서생태계 현황(조간대·조하대 저서동식물, 종조성, 우점종, 서식밀도, 생체량, 생태지수, 피복도 등)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저서생태계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유영(遊泳)	·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유영생태계 현황(어란·자치어 및 어류·

	생태계	수산자원의 종조성, 밀도, 개체수, 우점종, 생태지수 등)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유영생태계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경관 및 빛공해	· 사업해역 및 주변지역의 법정 보호지역·지구 현황, 주요 경관자원, 빛환경 및 시각자원 현황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경관 및 빛환경 등의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소음 및 진동	· 사업해역의 수중소음 현황(방향별·이격거리별 배경소음 등)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중소음 변화 범위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전자기장	· 사업해역 및 해저케이블 경과지의 전자기장 현황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기장 수준 및 영향범위 예측 ·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장 영향 최소화 방지 대책 수립
	대기질 및 기상(氣象)	· 사업해역 및 주변 지역의 기상 현황(풍향, 풍속, 돌풍(gust), 기온, 기압, 습도, 강수량, 태풍, 안개 발생일수 등) · 사업해역 및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PM10, PM2.5, 황산화물 등) ·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지 기상 및 대기질 영향예측 · 공사 및 운영 단계 선박 이용 시 대기 오염 최소화 대책 수립 · 대기질의 변화가 심할 수 있는 시기(시간별, 계절별)의 관리 강화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조사 · 사업시행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운영 시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등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발생량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저감방안 수립
	해양성조류(鳥類)	· 해양조류의 현황 및 분석 결과(조류의 충돌위험, 공간이용변화 및 취·서식지 소실, 번식집단 피해, 고밀도 이동경로 영향 및 변화 가능성, 풍력터빈 밀도 및 배열에 의한 장벽 효과 가능성 등)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해양조류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해양포유류	· 해양포유류, 바다거북류 등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해양포유류 변화·영향 예측 · 영향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저감방안 수립 · 대안 별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최종적으로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 단계에 필요한 저감방안 수립
2. 적정성 평가 분야	인구	· 사업해역 주변지역의 인구현황, 민간계층 현황 등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산업	· 사업해역 주변지역의 어업권 현황 조사 · 사업시행으로 주변 어업권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 공유수면 外 지역

분야	항목	내용
1.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동식물상(조류 포함)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번식, 월동, 취식지 등) 가치가 있는 주요종이나 개체 등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조류 포함) 및 생태계에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자연환경자산	· 법정보호종, 환경보전·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분포현황 등 조사 · 사업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2. 대기환경	대기질	· 대기질 현황(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기환경기준항목 현황 농도 등) 조사 · 사업시행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기상	· 기상 현황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운영 시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등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발생량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
3.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 지표수 및 지하수, 해당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사업시행에 따라 대상 수역에 미치는 수질변화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분야	항목	내용
		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수리·수문	· 해당 수역의 수리·수문현황 (하천, 대상수역의 유황 현황, 호소 및 저수지 수문현황 등) 조사 · 사업시행에 따라 대상 수역에 미치는 수리·수문변화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토지이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조사 · 사업시행 시 토지이용계획변화에 따른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4. 토지환경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토사·비옥토 유출, 사면지형·지질 현황조사 · 사업시행 시 지형·지질변화에 따른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토양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토양 및 지하수 특성 등 조사 · 사업시행 시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조사 · 사업시행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5. 생활환경	소음·진동	· 건설장비, 헬기투입 등 소음·진동 영향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경관	· 경관자원현황, 사업지역과 경관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관 변화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전파장해	· 송전선로 설치 주변지역 전파장해 영향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전파장해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인구	· 사업지역의 인구현황, 민간계층 현황 등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6. 사회경제환경	주거	· 사업지역의 주거현황 등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분야	항목	내용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상풍력산업발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 4.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검 토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결재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지정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	---	----------------------------	---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기관	
------	--

분쟁 관계자	분쟁 관계자 성명(기관·단체 등의 명칭)
	분쟁 관계자 주소(기관·단체 등의 주소)
	전화번호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해당 분쟁사항에 관한 협의 진행 상황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참고사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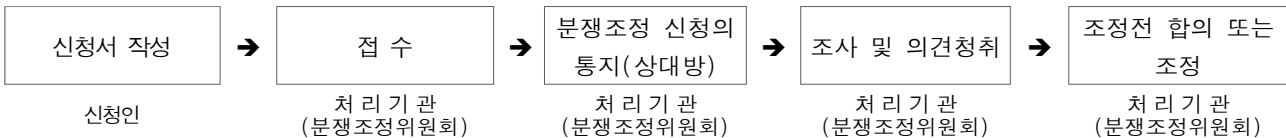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분쟁사항에 관한 협의 진행 상황 2. 그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참고사항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서

신청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상풍력발전 사업개요서 2.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3. 총사업비 및 산출 근거, 재원조달계획,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요청하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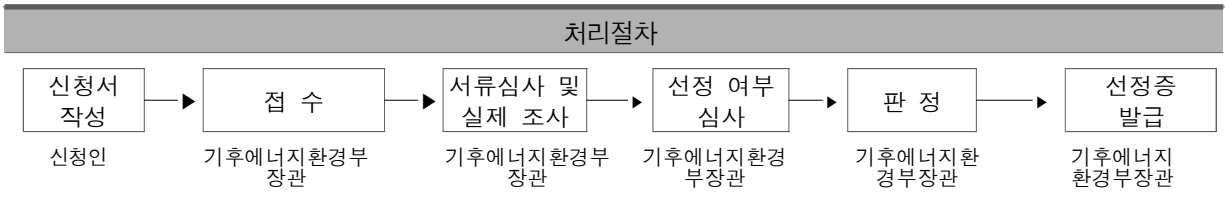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전사업계획서 가. 발전사업의 건설기간 나. 발전사업의 총사업비 다. 발전사업의 사업구조 라. 발전사업의 운영기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전지구 유효기간 내에서 건설기간을 제외한 발전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마.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3. 자금조달계획서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상생계획서 5. 해상풍력산업발전 기여계획서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

1. 기업명(업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3. 대표자:
4. 소재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0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아래 첨부서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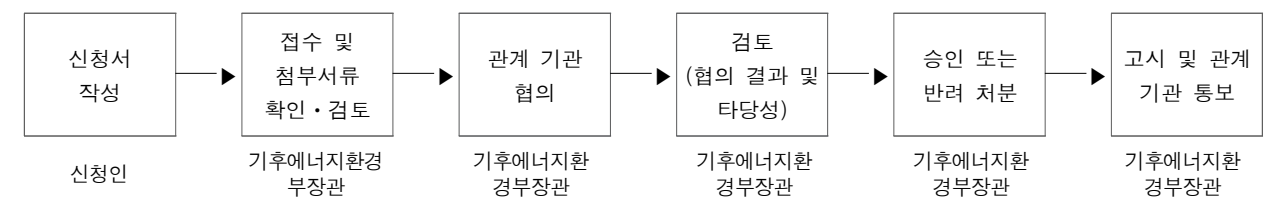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단지 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11.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6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영향조사 및 환경성 평가 검토·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해상풍력시설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설비의 설계도서 및 기술시방서 나. 공사공정표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전기설비·기계설비·구조물의 안전성 및 적정성 검토 포함) 14. 해양활동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5. 해상풍력시설의 해체와 원상회복 계획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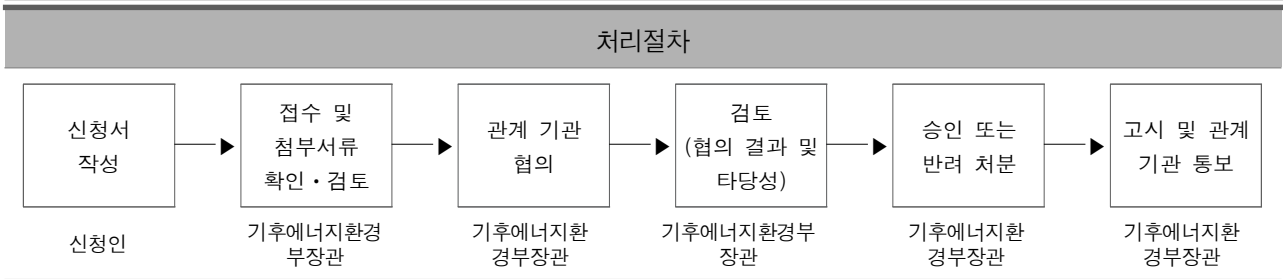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아래 첨부서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승인받은 실시계획서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 음
------	---	------------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평가지준비서

작성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준비서 구성항목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지역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공유수면지역은 제외한다)	
	4. 지역 개황	
	5. 보전목표기준 설정	
	6.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7.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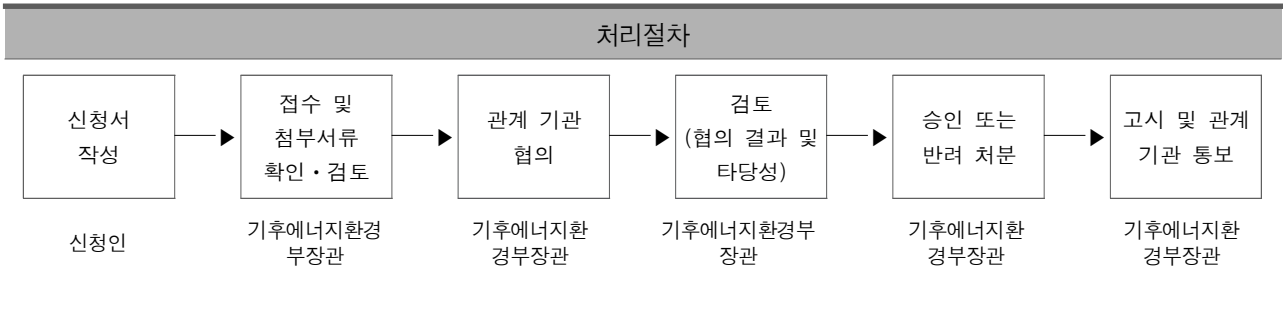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평가지준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평가준비서 구성항목별 세부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평가서

작성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평가서 항목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보전목표기준	
	8. 현황 조사, 영향 예측 및 분석·평가 및 저감방안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10. 사후 모니터링 계획	
	11.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2.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3. 대안 설정 및 평가	
	14. 종합 평가 및 결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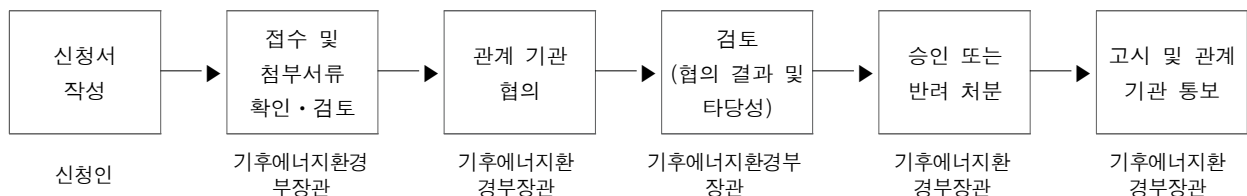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환경성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3. 용어 해설 4.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5. 환경성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서번호 :

제목 :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참조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작성인이 작성한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평가서 작성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평가서
항목별
검토의견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해상풍력발전사업 착공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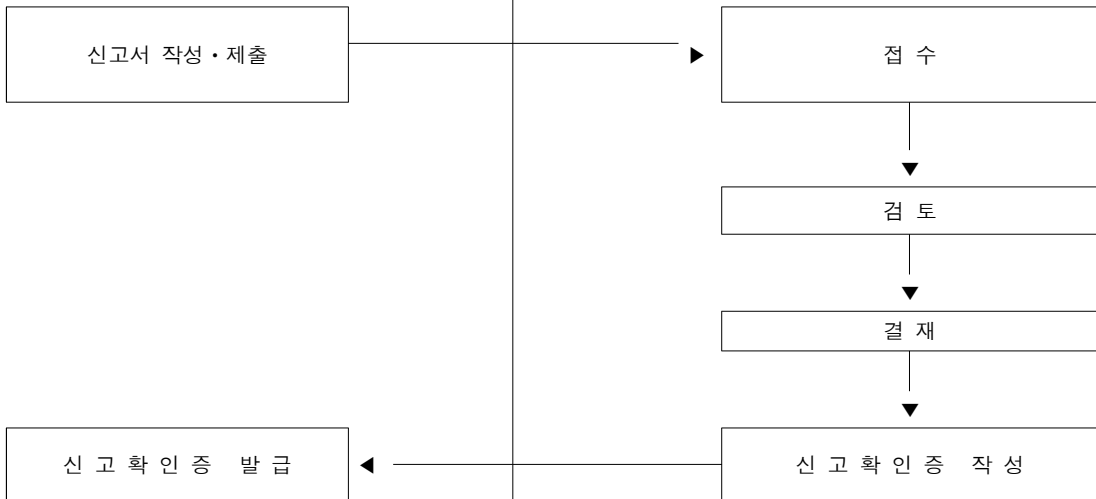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고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 인 번 호	승인일자		
위 치	지번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주 소	(전화번호:)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 사 명		도급금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 급 계 약 일 자
주 소	(전화번호:)		
공사감리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금액 (계약일자)
	주 소	(전화번호:)	
④관계전문기술자			
분 야	자 격 증	자 격 번 호	주 소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첨부서류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서 사본 2. 공사계획서 3. 공사감리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해상풍력 담당부서)
-------	---------------------------------------



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중지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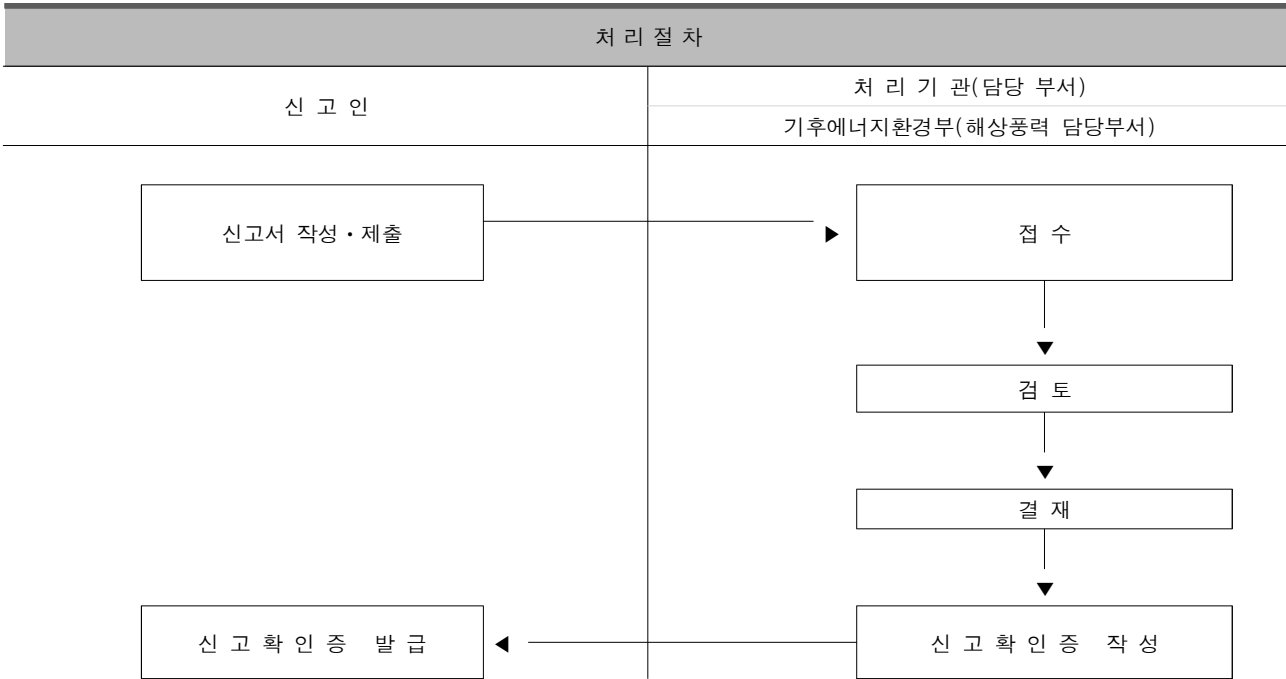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고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 인 번 호		승인일자	
위 치		지번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사중지사유		공사중지기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중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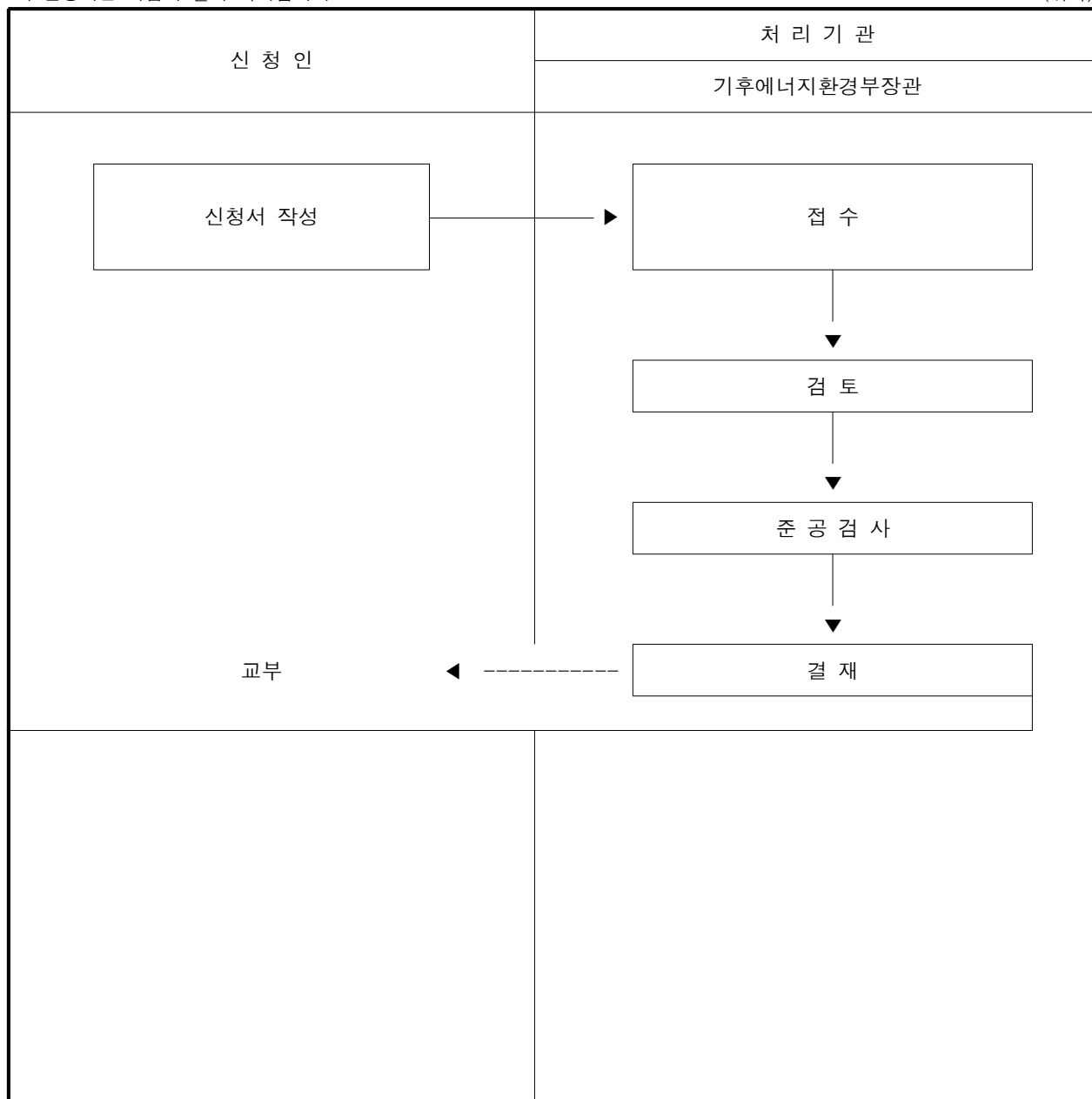
(앞쪽)

발전지구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 청 내 용											
사업 명칭						사업 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	용 도 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 설 별										
	개 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합격증 3.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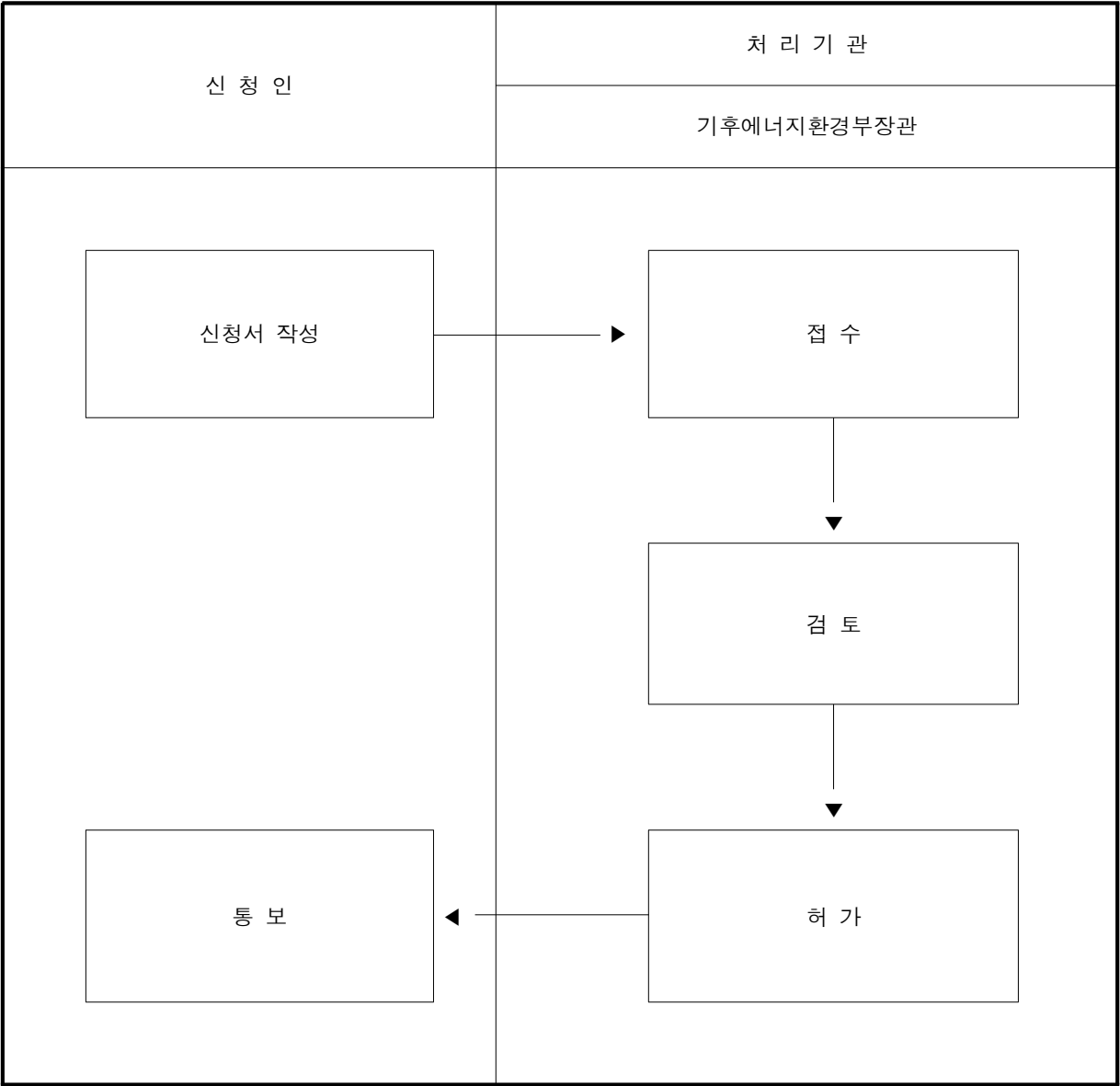
(뒤쪽)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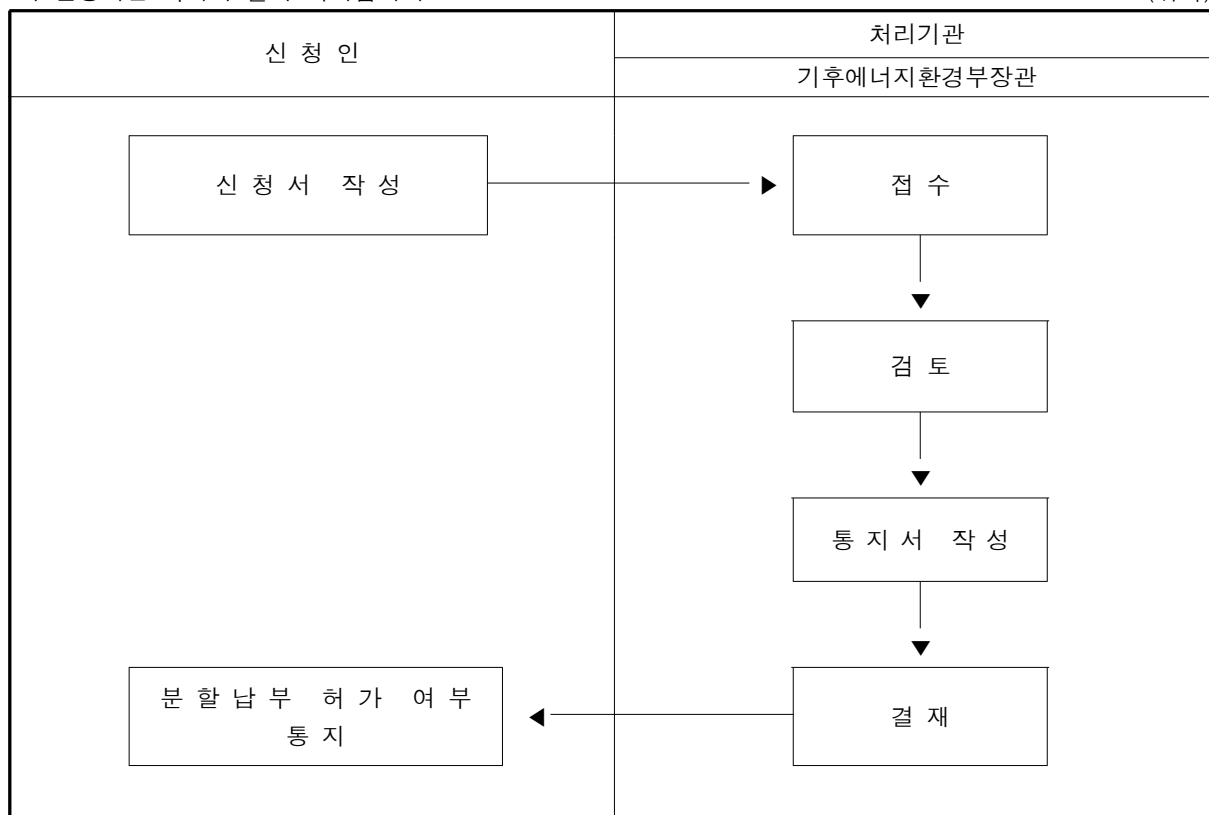
(앞쪽)

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시설명				
	② 납부의무자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전화:)			
당초 부과 내용					
⑥ 납부고지서 수령일	⑦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⑧ 부과 일시	⑨ 부과 금액	⑩ 납부 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용					
⑪ 분할납부 기한		⑫ 분할납부 신청 금액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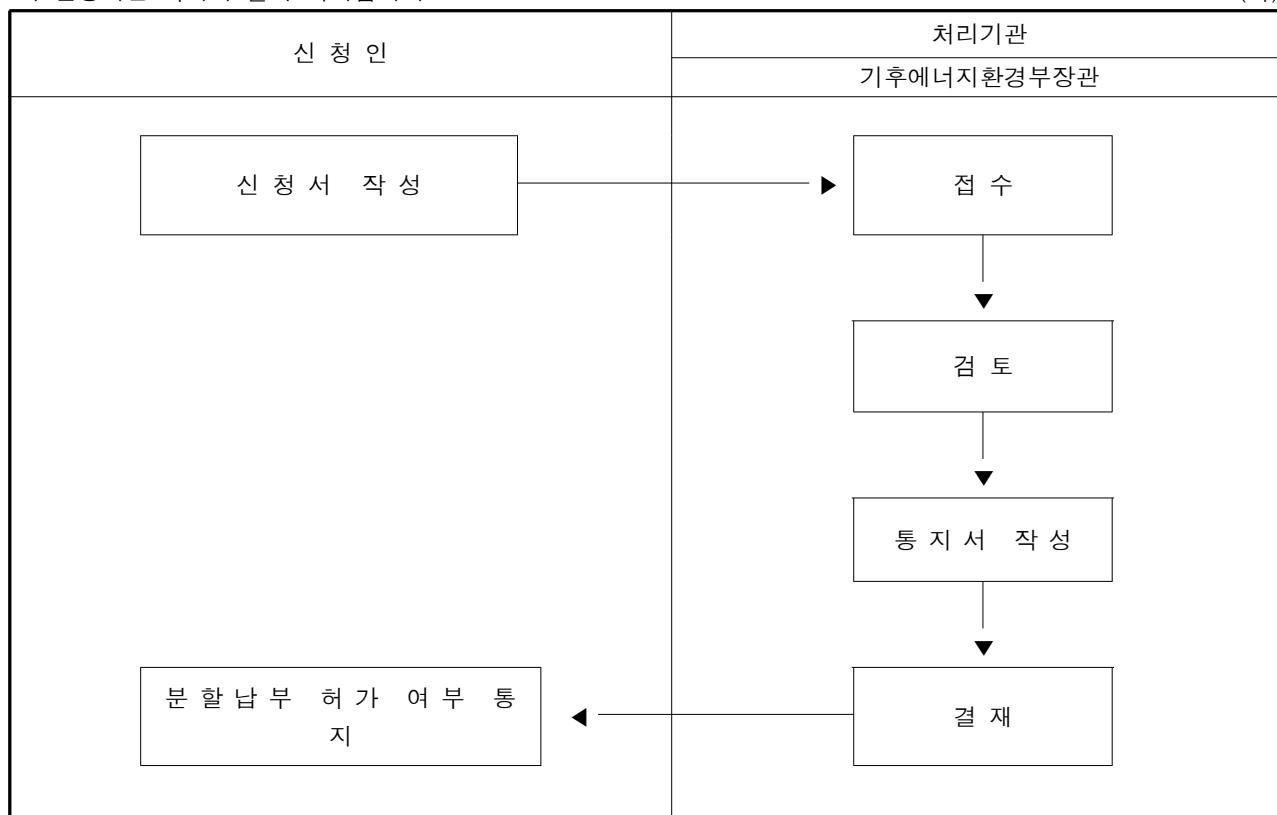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해상풍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계획 2. 해상풍력 기술 관련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 3. 해상풍력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쪽)



지정번호 제 호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직인